

의안번호	2204217
의 퇴 인	장철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5.
추 계 번호	24A3825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교구등에 관한 특례)	·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(이하 “교구등”이라 함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음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(제1항) -1. 교구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-2.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-3. 그 밖에 교구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(교구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구등에 관한 특례(안 제14조의2)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하여금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(이하 “교구등”이라 함)이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14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의 교구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 등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(관련 사업: 「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(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)」, 2024년 예산 35억원¹⁾)

[표 1]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현황(산업통상자원부)

(단위: 건)

세부사업	2021	2022	2023	2024.9.
안전성조사 건수	3,014	2,450	2,337	1,753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다만, 개정안의 “교구등”의 범위가 어린이제품²⁾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교구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사유인 “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” 등이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동 사업비에는 어린이제품뿐 아니라 전기·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음
 2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“어린이제품”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.
 가.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
 나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 다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·포장
 마. 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키시설(遊技施設) 또는 유키기구(遊技機具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